

(號紀四二八一年十月二十七日第三種郵便物認可)

BAO 15879A

# 官報

## 法律

國會議決로 確定된 韓國銀行法을 이에 公布한다

大統領 李 承 晚 副

號紀四千二百八十三年五月五日  
國務委員 國務總理署理 申 性 模  
國務委員 財務部長官 崔 淳 周  
法律第三百三十八號

### 韓國銀行法

#### 第一章 設立과 目的

第一條 本法에 依하여 韓國銀行을 設立한다

韓國銀行은 法人으로서 모든 權利를 行使하며 모든 義務를 負擔한다

韓國銀行은 本法, 其他 正式로 批准된 金融, 通貨에 關한 國際協定을 包含하는 法令과 定款에 依하여 運營되야 한다

第二條 韓國銀行은 本店을 서울에 두고 그 業務의 遂行上 必要하다 認定할 때 是國內外의 支店, 出張所, 代理店을 두며 또는 他銀行과 換去來 契約을 할 수 있다

第三條 韓國銀行의 主要目的은 左와 같다

一、國民經濟發展을 爲한 通貨價値의 安定  
二、銀行, 信用制度의 健全化와 그 機能向上에 依한 經濟發展과 國家資源의 有效한 利用의 圖謀

第三百四十五號  
號紀四二八三年五月五日

大韓民國政府公報處 發行

三、正常的인 國際貿易, 外換去來의 達成을 爲한 國家의 對外 經濟準備資 金의 管理  
第二章 資本金, 利益金과 積立 金

第四條 韓國銀行의 資本金은 十五億圓으로 하고 全額을 政府가 出資한다

韓國銀行은 設立當時의 積立金으로서 三億圓을 保有하여 政府가 支辨한다

第五條 韓國銀行의 年純利益金은 資產의 充分한 減價後에 充當한 後左에 依하여 使用하여야 한다

一、純利益金의 百分之二十五는 積立金이 五億圓에 達할 때 까지 積立하여야 한다

二、前號의 積立金을 剩餘의 殘餘純利益金은 政府의 一般收入으로 納付한다

第六條 韓國銀行의 會計年度에 있어서 發生한 損失은 積立金으로 補填하고 積立金이 不足할 때에 는 法律의 定하는 法에 依하여 政府가 補償한다

第三章 機構과 管理  
第一節 金融通貨委員會

第七條 韓國銀行에 金融通貨委員會를 둔다

金融通貨委員會는 本法에 規定된 範圍內에서 通貨, 信用, 外換에 關한 政策의 樹立과 金融通貨委員會에 明白히 附與된 其他 機能과 權限을 行使하여 韓國銀行의 業務, 運營, 管理에 關한 指示監督을 한다

## 目次抄錄

● 法 韓國銀行法 銀行法

金融通貨委員會는 前項의 職務를 遂行하기 爲하여 必要한 모든 規程, 指示를 發할 수 있다

金融通貨委員會는 總裁의 推薦에 依하여 韓國銀行의 職員을 任免하며 그 報酬를 定한다 但下級職員의 任免과 報酬의 決定은 總裁에 委任할 수 있다

金融通貨委員會는 韓國銀行의 定款을 定하고 每年度 豫算과 決算을 承認하여야 한다

韓國銀行의 定款變更은 政府의 承認을 受여야 한다

第八條 金融通貨委員會는 左의 七名의 正委員과 同數의 代理委員으로 構成한다

一、財務部長官은 正委員이 되고 財務部次官은 代理委員이 된다

二、韓國銀行總裁은 正委員이 되고 首席副總裁은 代理委員이 된다

三、金融機關의 選出한 各二名의 正委員과 代理委員

本號의 委員은 大統領이 金融機關의 選出한 候補者八名中에서 國務會議의 同意를 얻어 任命하며 그 任期는 一年으로 한다

各金融機關은 候補者를 選出에 있어서 同一한 表決權을 가진다

四、大韓商工會議所의 推薦한 各一名의 正委員과 代理委員

本號의 委員은 大統領이 大韓商工會議所의 推薦한 候補者四名中에서 國務會議의 同意를 얻어 任命하며 그 任期는 四年으로 한다

五、農林部長官의 推薦한 各一名의 正委員과 代理委員

本號의 委員은 大統領이 農林部長官이 推薦한 候補者四名中에서 國務會議의 同意를 얻어 任命하며 그 任期는 四年으로 한다

六、企劃處經濟委員會의 推薦한 各一名의 正委員과 代理委員

本號의 委員은 大統領이 企劃處經濟委員會의 推薦한 候補者四名中에서 國務會議의 同意를 얻어 任命하며 그 任期는 四年으로 한다

金融通貨委員會正委員과 代理委員은 國家公務員의 身分을 가진다

本條第四號, 第五號와 第六號의 規定에 依하여 任命된 初代委員의 任期는 各各三年, 二年, 一年으로 한다

第九條 財務部長官은 金融通貨委員會會議의 議長이 된다

財務部長官有故時에 는 韓國銀行總裁가 議長이 되고 財務部長官과 韓國銀行總裁 모두 有故時에 는 代理委員인 財務部次官, 首席副總裁의 順位로 議長이 된다

第十條 本法에서 金融機關이라 함은 預金의 受入, 有價證券 또는 其他 債務證券의 發行에 依하여 一般民衆으로부터 債務을 負擔함으로써 獲得한 資金을 貸出하는 業務을 規則的, 組織的으로 營爲하는 韓國銀行以外의 모든 法人을 말한다